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기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허가 가능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고위 공무원, 교통.자동차.운송플랫폼.근로자 및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2) 위원이 심의안건의 당사자, 관련자 등인 경우 제척.기피.회피
- 3)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등의 경우 위원 해임 또는 해촉 가능
- 4) 위원회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관련 사항, 중요 규정의 제.개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가능
-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가능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행횟수 당 800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 또는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으로도 납부 가능
- 2) 허가 대수 300대 미만인 플랫폼운송사업자 중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

지 않은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허가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차등화하고,  
허가 대수 100대 미만인 경우 2년 간 징수유예도 가능

3) 기여금 미납 시 연체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하고, 미납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규정

4) 기여금은 매 분기별로 기여금 수납기관에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기여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5) 기여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자연재해.범죄피해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부 연기 신청 가능

6)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  
격 취득 필요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  
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여객의 운송편  
익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개선명령 가능

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세부 규정(안 별표 1, 별표 3, 별표5, 별표 6)

법 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  
처분 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 금액을 상세히 규정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의3제3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다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으로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근로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④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해촉 또는 교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외 장기출장, 질병, 공무원 임용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및 허가의 갱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7(플랫폼운송사업사전검토위원회) ① 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에 플랫폼운송사업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사전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및 허가의 갱신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2. 사업심의위원회의 허가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④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또는 교체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20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9(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매 분기 별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은행횡수 당 800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

2.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여금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허가대수가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여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고,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인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여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자동차 대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변경에 한한다)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기여금(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또는 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인가일 전날까지는 변경 전 사업계획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는 변경 후 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10(기여금 미납 시 연체료 및 행정처분)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해당 기간별 허가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개월 초과: 사업정지 1개월
2. 12개월 초과: 사업정지 3개월
3. 18개월 초과: 사업정지 6개월
4. 24개월 초과: 허가취소

제20조의11(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매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법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기여금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기여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금 수납기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기여금 수납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수납기관은 기여금의 산정 방법,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납부 방식 등을 기재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고지된 기여금을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여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제20조의10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12(이의신청) 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20조의11제4항에 따라 고지된 기여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13(기여금 납부의 연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

거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2. 도난, 보안사고의 발생 등 외부적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내외적 경제위기의 발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 기일 연기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1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처리”를 “처리(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플랫폼운송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를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 플랫폼중개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운수사업자에”를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수”를 “징수(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를 각각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 2 이상

제42조제1항 단서 중 “면허취소”를 “면허취소,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취소”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7호의3 중 “법 제49조의2 및 제49조의7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가맹사업”을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으로, “양도.양수”를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양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9조의6”을 “법 제49조의15”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한다.

7의4. 법 제49조의5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제48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 2021년 1월 1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이 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로, “일반택시(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승용자동차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란 다음에 플랫폼운송사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6년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 표 및 다목 중 “전기자동차”를 각각 “환경친화

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차대여사업용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별표 3 제목 중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를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별표 3 제2호 가목 표의 제1호 가목의 위반내용란 중 “면허 또는 신규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면허, 신규 허가를 받거나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가목의 1차 위반란 중 “사업등록취소”를 “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나목의 위반내용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가목의 위반내용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가목의 위반내용란에 7)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나목의 위반내용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나목의 위반내용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다목의 위반내용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다목의 위반내용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다목의 1차 위반란 중 “사업등록취소”를 “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위반내용란 중 “제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제4조, 제28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1차 위반란 중 “사업등록취소”를 “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제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로, “면허기간(한정면허)”를 “면허.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가목의 위반내용란 중 “면허”를 “면허.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라목의 위반내용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마목의 위반내용란 중 “면허”를 “면허.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제5조, 제29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기준,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가목의 위반내용란 중 “등록기준”을 “등록기준 및 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8호의 위반내용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1차 위반란 중 “사업등록취소”를 “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위반내용란 중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각각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2호에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위반내용란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1차 위반란 중 “사업등록취소”를 “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가목의 위반내용란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제외한다)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외한다),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다목의 위반내용란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내용란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 가목의 1차 위반란 중 “사업등록취소”를 “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위반내용란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23호의 위반내용란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의2의 위반내용란 중 “전단”을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의3의 위반내용란 중 “후단”을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제21조제13항”을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6호 버목의 위반내용란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서목의 위반내용란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26호 허목의 위반내용란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고목의 위반내용란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27호의 위반내용란 중 “제23조 또는 제33조”를 “제23조, 제33조, 제44조 또는 제49조의7”로 하고, 같은 표 제28호의 위반내용란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2호의 2부터 제3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9호 및 제40호의 1차 위반란 중 “사업등록취소”를 각각 “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로 한다.

|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 2 |

|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 8 |

7)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 10

<p>나.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및 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사업면허 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p>		
<p>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시 사업계획의 내용(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획 등)을 위반한 경우</p>	<p>사업일부 정지(30 일)</p>	<p>사업일부 정지(50 일)</p>	
<p>사.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p>	<p>사업일부 정지(3일)</p>	<p>사업일부 정지(5일)</p>	

32.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2	사업일부 정지(30일)	사업일부 정지(60일)	사업일부 정지(90일)
------------------------------------	-----------------	-----------------	-----------------	-----------------

32의2.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3	사업일부 정지(5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	-----------------	----------------	---------------------	---------------------

32의3. 법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4	사업일부 정지(30일)		
---	-----------------	-----------------	--	--

32의4. 법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2호의5	사업일부 정지(20일)		
--	-----------------	-----------------	--	--

32의5. 법 제50조에 따른 보증금 또는 용자금의 보조	법 제85조제1항	사업일부 정지(90일)	감차명령	
---------------------------------	-----------	-----------------	------	--

또는 용자받은 목적 외의	제 3 2 호	)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의6			

별표 5 제1호 비고 외의 부분과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7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 분 내 용
1.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호	○ 1차: 사업정지 30일 ○ 2차: 사업정지 60일 ○ 3차: 사업면허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2호	○ 사업면허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3호	○ 1차: 사업정지 60일 ○ 2차: 사업면허취소
4.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4호	○ 사업정지 20일
5.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의15제1항 제5호	○ 1차: 사업정지 30일 ○ 2차: 사업면허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15제1항제 6호	○ 사업정지 30일
7.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 제7호	○ 사업면허취소
8.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8호	○ 사업정지 20일
9.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9호	○ 사업면허취소
10.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0호	○ 사업정지 90일
11.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사업을 휴업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1호	○ 사업면허취소  ○ 사업정지 30일
12.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2호	○ 사업정지 10일
13.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 제13호	○ 1차: 사업정지 90일 ○ 2차: 사업면허취소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단위: 만 원)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위반내용	관계 법조 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동 차 대 여 사 업	플 래 트 폼 운 송 사 업 · 플 래 트 폼 중 개 사 업
			시내 버스 · 농 어촌 버스 · 마 을버 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 세 버 스	특 수 여 객	수 요 응 답 형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법 제85조제1항제3호										

다치게 한 경우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 는 플랫폼운송 사업자로서 해 당 연도의 교 통사고지수(교 통사고건수/보 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 우 1) 시내버스운 송사업·농어 촌버스운송사 업 및 마을버 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 송사업의 경 우 가) 운행형태 가 고속인 경 우: 2 나) 운행형태 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 송사업의 경 우: 2 4) 전세버스운 송사업의 경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	-----	-----	-----	--	-----	-----	-----	--	-----

우: 2									
5) 특수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경 우: 1									
7) 플랫폼운송 사업의 경우 :									
2									
나.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 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 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사 고	60	60	60	60	60	60	60	6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 2건의 교통사 고									
다. 1건의 교통사 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시외 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경 우에는 비교에 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8명 이상 9명 이하		1,600	800	800	1,600	1,200	800		
2) 5명 이상 7명 이하		1,200	400	400	1,200	800	400		
3) 2명 이상 4명 이하		800	200	200	800	400	200		
라.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 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0명 이상 19명 이하		1,200	400	400	1,200	800	400		
2) 6명 이상 9명 이하		800	200	200	800	400	200		
3. 법 제4조, 제28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 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법 제85조제1항제6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가.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540	540	540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2차	360	360							
	3차 이상	540	540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1차			40	40			40		
	2차			80	80			80		
	3차 이상			160	160			160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540

<p>마. 면허 또는 허가 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 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p> <p>1)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자가 그 사업 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 록한 차고지 와 인접한 자 기 소유의 주 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 우</p> <p>2) 전세버스운 송사업에 사 용하는 자동 차를 영업 중 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p> <p>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 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p>	1차	10	10	10	10	20	20	10	20	10
	2차	15	15	15	15	30	30	15	30	15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 하는 자동차 를 지정된 구 역에 밤샘주 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 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바. 법 제4조 및 이 영 제3조제 2호라목을 위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를 하고 개인 택시를 대리운 전하게 한 경 우		1차 2차				120 240				
4. 법 제5조, 제29 조, 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 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 사업의 면허기 준, 등록기준 또 는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 한 휴게실 등 부	법 제85 조제1 항제7 호	1차 2차 3차 이 상	90 180 270							

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0호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1차	40	40	40	20		40	40
		2차	80	80	80	40		80	80
		3차 이상	160	160	160	80		160	160
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차	20	20				20	
		2차	30	30				30	
		3차 이상	60	60				60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10	10				10	

운송을 거절한 경우											
6. 법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11호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75	150	150	150	150	150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60	60	60	3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6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90	180	180	180	180	180
7. 법 제1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등록·허가 또는	법 제85조제1항제12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차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1) 결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차					120	120		120	
	2차					180	180		180	
	3차 이상					360	360		360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	1차	100	100	100	50	100	100	100	100	100
	2차	150	150	150	75	150	150	150	150	150

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라. 노후차의 대 체 등 자동차 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 하지 못한 경 우.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 이 현저히 곤 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1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차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 획 변경의 인 가를 받지 않 거나 등록 또 는 신고를 하 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 의로 운행시간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20	20							
	2차	40	40							
바. 삭제 사. 플랫폼운송사 업 허가시 사 업계획의 내용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	1차									100
	2차									150

획 등)을 위반 한 경우											
아. 그 밖에 사업 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10	10	10	10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8. 법 제13조를 위 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관리 위탁하거나 운송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 한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14 호	1차 2차 3차 이 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9. 법 제14조(법 제35조 및 제49 조의9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 하여 인가를 받 지 않거나 신고 를 하지 않고 여 객자동차운송사 업 및 플랫폼운 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거나 법인 을 합병한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15 호										
가. 법 제14조제1 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 지 않고 여객 자동차운송사		1차 2차 3차 이 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업(개인택시운 송사업은 제외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 플 랫폼운송사업 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나. 법 제14조제4 항(법 제35조 및 제49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 지 않고 법인 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 업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1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3차 이 상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 용자동차의 표 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17 호	20	20	10	10	20	20	10		
11. 법 제18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 은 조 제3항에	법 제85 조제1 항제18 호									

다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한 경우		1차			60							
		2차			120							
		3차 이상			180							
나. 법 제18조제3항에 다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180							
		2차			360							
		3차 이상			540							
12. 법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	1차	500	500	360	360	500	360	360			360
		2차	1,000	1,000	720	720	1,000	720	720			720
13. 삭제												
14. 삭제												
15. 법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4	1차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및 그 옆 좌석 에 에어백을 설 치하지 않은 경 우									
16. 법 제21조제10 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 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 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20 호의5	1차 2차 3차 이 상					180 360 720		
17.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 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 에 따른 운수종 사자의 휴식시 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20 호의6	1차 2차	360 720	360 720			360 720		
17의2. 운송사업자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 업자는 제외한 다)가 법 제21조 제12항 전단(제 49조의9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법 제8 5조제1 항제20 호의7	1차 2차 3차 이 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7의3.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1조 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1차 2차 3차 이상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540 1,080 1,620	
18. 법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1차 2차 3차 이상			40 80 160	40 80 160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 외한다)										
나. 운임 또는 요 금을 받고 승 차권이나 영수 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 내버스, 농어 촌버스 및 마 을버스의 경우 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 며, 수요응답 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 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 하거나 관할관 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 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	40	40	40	40	40	40	40	40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	1차 2차	20 40								

지 않은 경우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 차 질서를 문 란하게 한 경 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40	40	40	40
바.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 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 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 기가 정상적으 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 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사. 하차문이 있 는 노선버스 (시외직행, 시 외고속 및 시 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 객자동차에 압 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 장치를 설치하 지 않거나 작 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한 경우	1차	360	360					360	
	2차	720	720					720	
	3차 이 상	1,080	1,080					1,080	
아. 차실에 냉방 · 난방장치를	1차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3차 이 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자. 차 안에 안내 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 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 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100 200	100 200						100 200	
차. 차내 안내방 송 실시 상태 가 불량한 경 우	1차 2차	10 15	10 15						10 15	
카. 버스의 앞바 퀴에 재생 타 이어를 사용한 경우	1차 2차 3차 이 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타. 앞바퀴에 튜 브리스타이어 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 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파. 원동기의 출 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2차 3차 이 상	1202 40 360	1202 40 360			120 240 360			1202 40 360	
하. 운전자를 보 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	1차 2차 3차 이	180 360 540							180 360 540	

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									
거. 그 밖의 설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1차	20	20	20	20	20	20	20	20	20
	2차	30	30	30	30	30	30	30	30	30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	10	10	10	10	10	10	10	10
	2차	15	15	15	15	15	15	15	15	15
더.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60	60	60	6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러.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1차			20	20			20		20
	2차			40	40			40		40
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	1차			180						180
	2차			360						360

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 자가 아닌 자 를 포함한다) 에게 운송사업 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 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한 경우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 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0	10	10	10		
서. 시외버스운송 사업자 및 전 세버스운송사 업자가 운수종 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 요령과 비상망 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 치 및 사용방 법 등 안전사 항에 관한 안 내 방송 자료 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 게 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 상		180 360 540			180 360 540				

<p>어. 전세버스운송 사업 운수종사 자가 대열운행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 적지로 이동하 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 로, 자동차전 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 지 않도록 지 도·감독하기 를 게을리 한 경우</p>	<p>1차 2차 3차 이 상</p>	<p>180 360 540</p>						
<p>저. 전세버스운송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로 하여 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 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 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 한 사항을 안 내하도록 지도</p>	<p>1차 2차 3차 이 상</p>	<p>180 360 540</p>						

· 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 우								
처. 전세버스운송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로 하여 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 주기·스피커 ·조명시설 등 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 과 노래 등 소 란 행위를 하 는 승객을 제 지하고, 필요 한 사항을 안 내하도록 지도 · 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 우	1차 2차 3차 이 상				180 360 540			
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차 2차 3차 이 상					180 360 540		
터.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및 특 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차 2차 3차 이 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 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퍼. 운송사업자	1차	60	60	60	60	60	60	60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2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180	180	180	180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360	360			360					
		2차 이상	720	720			720					
19.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호	1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2차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3차 이상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0. 법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1차	30	30	30		30	30	30			30
		2차	60	60	60		60	60	60			60
		3차 이상	90	90	90		90	90	90			90
20의2. 법 제27조	법 제85조	1차	60	60			60					

의3제1항을 위 반하여 영상기 록장치를 설치 하지 않은 경우	조제1 항제23 호의2	2차 3차 이 상	120 180	120 180			120 180			
20의3. 법 제27조 의3제7항을 위 반하여 영상기 록장치의 운영 · 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23 호의3	1차 2차 3차 이 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2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 위탁 허가를 받 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관 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 업자가 아닌 자 에게 관리위탁 한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25 호	1차 2차 3차 이 상							360 720 1080	
22. 법 제34조제3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 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 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 거나 이를 알선 한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26 호	1차 2차 3차 이 상							180 360 540	
23. 제49조의3제2 항에 따른 조건 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	법 제85 조제1 항제32 호의2	1차 2차 3차 이 상							180 360 540	
23의2. 제49조의6	법 제8	1차			60	60				60

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조제1항제3호의3	2차 3차 이상			120	120						120
23의3.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4호의4	1차			360							
23의4.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5호의5	1차				240						
23의5.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6호의6	1차 2차	180 360									
24. 1년에 3회 이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호		20	20	20	10	20	20	20	20	20	

2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4호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60	60	60	30	60	60	60	60	60
			2차	120	120	120	60	120	120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90	180	180	180	180	180
			1차	40	40	40	40	40	40	40	40	40
			2차	80	80	80	80	80	80	80	80	80
26. 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5조제1항제36호	1차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27. 관할 관청이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38호	1차	180	180	180	180			180			
		2차	360	360	360	360			360			
		3차 이상	540	540	540	540			540			

3. 플랫폼가맹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 액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3호	240
2. 법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4호	100
3.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제5호	120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6호	100
5.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8호	120
6.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또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10호	360
7.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개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11호	120
8. 법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의15제1항제12호	50
9. 법 제49조의15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15제1항제13호	360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호	5	10	10
다.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2호	500	750	1,000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2호	10	15	20
마. 법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3호	50 20	75 30	100 50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3호	500	1,000	1,000
사. 법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	법 제94조제3항제1호	20	30	50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2호	20	30	5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	20	30	50
차. 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제1항제3의2호	50	75	100
카.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4호	50	75	100
타.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5호	50	75	100
파.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	50	50	50
하.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	10	15	20
거.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20	20	20
너. 법 제26조제1항제6호·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10	10	10
더.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50	50	50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10	10	10
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50	50	50
머.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4항	3	5	10
버.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20	30	50
서.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50	50	50
어.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9호	100	150	200
저. 법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0호	100	150	200
처. 법 제65조제1항(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1호	200	300	500
커. 법 제66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	500	750	1,000
터. 법 제67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법 제94조제1항제5호	500	750	1,000

않은 경우				
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2호	25	50	50
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3호	50	75	100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4호	50	75	100
노.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5호	500	500	500
도.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16호	500	500	500
로. 법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3	360	720	1,000
모. 법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4	540	1,000	1,000
보.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5	30	60	90
소.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6	30	60	90

자				
오. 법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법 94조제3항제5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20	20	20
2) 법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20	20	20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경우		20	20	20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	20	20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20	20	20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10	10	10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킴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가) 안전운행을 위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	50	50
나) 가)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10	10
8)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5	2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의2(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u>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p>	<p>&lt;삭 제&gt;</p>
<p>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u>운송사업</u>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p> <p>② <u>운송사업자</u>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p>	<p>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u>운송사업자 및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u>(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          -----          -----          -----.</p> <p>② <u>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u>-----          -----          -----          -----          -----.</p>

③ (생략)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  
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  
하는 자(「소득세법」 제168  
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  
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  
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  
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제20조의2(개선명령) 법 제49조의  
5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 법 제4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  
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49조  
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  
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  
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  
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  
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미만  
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0년 미만의 기  
간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  
다.

② 법 제49조의3제3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

제20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면허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소를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할 것

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으로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근로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④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0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 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해촉 또는 교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외 장기출장, 질병, 공무원 임용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및 허가의 갱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심의위원회

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7(플랫폼운송사업사전검

토위원회) ① 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에 플랫폼운송사업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사전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및 허가의 갱신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

2. 사업심의위원회의 허가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④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또는 교체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20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9(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매 분기 별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

<신 설>

<신 설>

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운행횟수 당 800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

2.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을 매 분기별로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여금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허가대수가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여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고,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인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여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자동차 대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변경에 한한다)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기여금(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또는 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인가일 전날까지는 변경 전 사업계획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는 변경 후 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10(기여금 미납 시 연체료 및 행정처분)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신 설>

<신 설>

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해당 기간별 허가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개월 초과: 사업정지 1개월
2. 12개월 초과: 사업정지 3개월
3. 18개월 초과: 사업정지 6개월
4. 24개월 초과: 허가취소

제20조의11(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매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법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기여금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기여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금 수납기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기여금 수납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2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수납기관은 기여금의 산정 방법,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납부 방식 등을 기재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고지된 기여금을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여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신 설>

<신 설>

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제20조의10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12(이의신청) 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제20조의11제4항에 따라 고지된 기여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13(기여금 납부의 연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

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2. 도난, 보안사고의 발생 등 외부적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내외적 경제위기의 발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 기일 연기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0조의14(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신 설>

제20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3. 법 제49조의12제2항제2호에

<신 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다른 차량위치의 통지의 개선  
4.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20조의17(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면허취소(별표 1 제2호 및 제13호에 따른 취소를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할 것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 7. (생략)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생략)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시외버스운송사업과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
6. ~ 7. (현행과 같음)
8. -----  
-----  
-----  
----- 시외버스운송사업과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  
-----  
-----
9. (현행과 같음)
10. -----  
-----  
-----  
----- 시외버스운송사업과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플랫폼운송사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  
의 수리 및 처리

12. (생략)

12의2.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  
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  
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  
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  
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  
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  
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  
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

업은 -----

11. -----  
-----  
----- 처리(법 제49  
조의9에서 준용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  
-----  
-----  
-----  
-----  
-----  
-----  
-----  
-----  
-----  
-----  
----- 해당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  
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  
다.

15. -----  
-----

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  
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  
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생략)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  
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  
과처분과 그 징수

③ (생략)

----- 시  
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  
사업,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  
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  
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  
이라 한다), 플랫폼중개사업에  
-----

15의2. (현행과 같음)

16.-----  
--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  
업자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  
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

17. ----- 징수(플랫폼  
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  
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  
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  
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거나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면허취소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 바. (생략)

<신설>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83조와 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다

제41조(면허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 2 이상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  
-----  
-----  
-----  
-----  
-----.



의7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  
맹사업의 면허 등,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신 설>

8. 법 제49조의6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 15. (생략)

② (생략)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  
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운송  
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  
도·양수 ---

7의4. 법 제49조의5에 따른 플  
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 플랫포  
ם가맹사업-----  
-----

9.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 20  
21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6